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

수신자 장성군수, 장성군의회 의장
(경유)

제 목 2023~2026년도 장성군의회 의정비등 결정 통보

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~2026년도 장성군의회 의정비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❍ 결정내용

구 분	결 정 내 용
2023년도 월정수당	2022년도 월정수당에 1.4% 인상하여 반영
2024~2026년도 월정수당	지방공무원 보수률 적용
2023~2026년 의정활동비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

끝.

선결	의장	고재진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2022. 10. 04.	결재공람	의회사무과장	한소영
	번호	4273		의회행정팀장	[illegible]
처리과		의회사무과			
담당자		임동간			
협조					

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

간사 신정숙 위원장 조복래

협조자

시행 장성군의정비심의회-1(2022.9.29) 접수

우

전화 전송